

1. 개정이유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,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0조 개정으로 완화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지침에 반영해 일선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장제2호다목(3))

나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 시 도로사업과 도로가 아닌 사업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던 평가대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증진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(안 제11장제1호가목(2)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호가목(2) 중 “**법 제7조(지역개발계획의 수립)**”를 “**법 제7조**”로 하고, 같은 장 제4호가목 중 “**지역개발계획의 수는**”을 “**지역개발계획은**”으로, “**거점육성형 각각 1개의 계획으로 한다.**”를 “**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.**”로 하며, 같은 장 제7호 중 “**모사업 평가, 기반시설사업 평가 등으로**”를 “**사업 평가로**”로, 같은 호 중 “**적합·부적합 여부를 체크하고,**”를 “**우수, 보통, 미흡으로 평가하고,**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**모사업**”을 “**사업**”으로, “**등 개별적인 중앙부처 및 민간개발사업**”을 “**등의 모사업과 진입도로, 주차장과 같은 모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**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장 제8호가목 본문 중 “**한다**”를 “**하고,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사업내역과 관련 자료만 제출한다.**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영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,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제1호 중 “**시·도지사**”를 “**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**”으로 하고, 같은 장 제4호나목(5)(다)2)가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장 제5호다목 중 “**지역개발사업구역이**”를 “**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**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**지역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면**”을 “**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**

해제된 경우”로 한다.

가) 용도별 분류

- 토지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건축물 이용계획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.

제4장제1호라목 중 “조합”을 “조합(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)”으로 하고, 같은 장 제3호라목 중 “규칙 제5조에 따른”을 “영 제20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장 제5호나목(1) 중 “하위”를 “하위 100분의”로, “사업으로 평가받은”을 “평가를 받은”으로 한다.

제5장제1호 중 “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”를 “법 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장 제4호가목(1)부터 (4)까지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9조 제7항”을 “영 제20조의2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장제7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.

제7장제2호다목(1)(가)부터 (다)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시기(始期)와 종기(終期)를”을 “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”로 하고, 같은 장 제7호다목(1)(나) 중 “각 1”을 “각 항목 중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장 제8호가목(1) 중 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정권자의”를 “지정권자의”로, 같은 (1) 중 “공급할”을 “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할”로 하며, 같은 목 (2) 중 “법 제19조1호부터 3호까지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장 제9호가목 중 “「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다목에”를 “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다목에”로 하며, 같은 장 제10호 중 “법 제27조제1항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은 법 제27조제1항”으로, 같은 호 중 “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”을 “지역개발사업에

서”로 한다.

제9장제2호가목 중 “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”를 “지역개발사업구역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(3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장 제3호가목(1)(가)부터 (차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변경하고자”를 “지정하고자”로 하고, 같은 (1)(가)부터 (차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행령 제11조”를 “영 제11조”로 하며, 같은 (1) (사)3)(아) 외의 부분 중 “5를”을 “5%를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(1) 본문 중 “변경하는”을 “변경하고자 하는”으로 한다.

(3)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

제11장제1호가목(1) 중 “법 제11조제8항제1호 및 제65조에”를 “법 제65조에”로, 같은 (1) 중 “국비지원”을 “재정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2)(가) 본문 중 “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총사업비 50억원이상 사업으로서, 지역개발계획”을 “지역개발계획”으로, “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”을 “국토교통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(가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호 다목(4)(가) 중 “현지실사”를 “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”로, “협의의견,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”를 “협의의견 등을 첨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장제1호가목(2) 중 “시군수의 30를 기준으로”를 “시·군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장 제2호나목(1) 및 (2) 중 “법 제68조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68조”로 하며, 같은 장 제3호가목(1) 중 “50를”을 “100분의 50을”로 한다.

제13장제2호 중 “2023년 10월 15일”을 “2026년 10월 15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【별표1】 지역개발계획안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및 실현가능성 검증기준

1. 신규사업

평가분야	사업시행자	평가항목	평가지표
기본 평가	지자체, 민간, 공동시행 등	입지적합성	입지적합성
		정책목적에의 부합성	정책부합성
사업평가	지자체, 민간, 공동시행 등	계획 충실성	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
			사업 관련 관계자 의견 (관계기관/주민/전문가 등)
			기반시설 사업의 필요성
		사업추진 가능성	토지 확보 용이성
			재원 확보 가능성 (민간 시행 또는 지자체·민간 공동시행시 민간 투자의향 포함)
			수요확보 가능성 등
	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		
	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		

*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별로 '우수', '보통', '미흡'으로 평가하며, 기본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'미흡'으로 판정되면 사업을 제척

2. 기존사업 : 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변경 내용(사업기간, 대상지, 사업규모 등) 및 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(정성평가)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【별표3】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기준

평가분야	사업시행자	평가항목	평가지표
모사업 (개발사업)	지자체, 민간, 공동시행 등	모사업의 진척 정도	토지 확보 용이성
			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
			사업시행자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여부 (지자체 시행시 평가제외)
		재원조달 가능성	사업시행자 투자의향 (지자체 시행시 평가제외)
			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
			사업시행자 부채비율 (지자체 시행시 평가제외)
기반시설사업	지자체, 민간 등	사업적절성	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(지자체 시행시 평가제외)
			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* (도로사업)
			이용수요 확보 가능성 (도로외 기반시설사업)
			시설규모의 적절성
			사업비 산출 타당성

* 왕복 2차로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평가를 제외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장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</p> <p>1. 계획의 성격</p> <p>가. 법정계획</p> <p>(1) (생 략)</p> <p>(2) 지역개발계획은 <u>법 제7조(지역개발계획의 수립)</u>에 근거하여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.</p> <p>(3) (생 략)</p> <p>2. ~ 3. (생 략)</p> <p>4. 계획의 구분</p> <p>가. <u>지역개발계획의 수는</u>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<u>각각 1개의 계획으로 한다.</u></p> <p>나. ~ 다. (생 략)</p>	<p>제2장 -----</p> <p>1. -----</p> <p>가. 법정계획</p> <p>(1) (현행과 같음)</p> <p>(2) ----- <u>법 제7조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3) (생 략)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가. <u>지역개발계획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.</u></p> <p>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
5. ~ 6. (생략)

7. 검증보고서의 작성

검증보고서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지역개발사업별로 작성한다.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기본평가, 모사업 평가, 기반시설사업 평가 등으로 구분된 항목에 대하여 적합·부적합 여부를 체크하고, 그에 대한 사유를 적시한다(영 제4조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검증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).

가. (생략)

나. 모사업 평가는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 개별적인 중앙부처 및 민간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, 계획의 충실성과 사업추진 가능성, 수요 확보가능성, 사업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다. 기반시설사업 평가는 연결 및 진입도로, 탐방로, 자전거도로, 주차장, 정주환경개선 등 국비를 지원받는 기반시설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, 사업의

5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, 사업 평가로-----

----- 우수, 보통, 미흡
으로 평가하고, -----
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사업 평가는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모사업과 진입도로, 주차장과 같은 모사업 관련 기반시설사업의-----

-----.

<삭제>

공공성과 연결성 및 중복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8. 계획의 변경

가.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 다만,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만 제출한다.

나. ~ 라. (생략)

마. 지역개발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바. ~ 아. (생략)

제3장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

1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권자

- 지정권자 : 시·도지사

8. -----

가. -----

---- 하고,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사업내역과 관련 자료만 제출한다. <단서 삭제>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영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, -----

-----.

바. ~ 아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---

1. -----

- ----- 시·도지사

2. 3. (생략)

4.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작성

가. (생략)

나.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방법

(1) ~ (4) (생략)

(5) 인구수용·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

(가) ~ (나) (생략)

(다) 토지이용계획 : 장래의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.

1) (생략)

2)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.

가) 용도별 분류

- 토지의 용도구분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.

또는 국토교통부장관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(1) ~ (4) (현행과 같음)

(5) -----

(가) ~ (나) (현행과 같음)

(다) -----

-----.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-----.

가) -----

- -----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건축물 이용계획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

<p>마.·바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시행자 지정 절차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시·도지사는 시행자를 지정 한 경우에는 <u>규칙 제5조에 따른</u> 시 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 정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</p> <p>나.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 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</p> <p>(1)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연 차별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을 말하며, 현저히 부진한 경우란 법 제66조(지역개발계획의 집 행결과 평가)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집행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여 <u>하위 10</u>에 해당하는 <u>사업</u> <u>으로 평가받은</u> 사업을 말한다.</p> <p>다.·라. (생략)</p>	<p>마.·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----- <u>영 제20조에 따라</u> 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</p> <p>(1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위 100분의 10</u> ----- <u>평가</u> <u>를 받은</u>-----.</p> <p>다.·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대행</p>	<p>제5장 ---</p>

<p>1. 대행사업의 목적</p> <p>「<u>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<u>19조</u> 제6항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범위 및 업무분담, 대행사업자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대행사업의 범위</p> <p>가. <u>법 제19조 제7항</u>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5. ~ 8. (생략)</p>	<p>1. -----</p> <p><u>법 제19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가. <u>영 제20조의2 제2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</p> <p>가. (생략)</p> <p><u>마.</u> (생략)</p> <p><u>바.</u> (생략)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6장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나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</p> <p><u>다.</u>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장 실시계획의 승인</p>	<p>제7장 ---</p>

1. (생략)

2. 실시계획의 내용

가.·나. (생략)

다. 사업시행기간

(1)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시기(始期)와 종기(終期)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(2)·(3) (생략)

라. ~ 아. (생략)

3. ~ 6. (생략)

7.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

가.·나. (생략)

다.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

(1) 처분계획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

(가) (생략)

(나)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(1) -----

--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-

-----.

(2)·(3) (현행과 같음)

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(1) -----

(가) (현행과 같음)

(나) --- 각 항목 중 어느 하나-----

-----.

(2) (생략)

8. 원형지의 공급

가. 원형지 공급의 개요

(1) 원형지 공급의 의미

‘원형지’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·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토지(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)를 말하며, 시행자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.

(2) 원형지 공급자 및 개발 절차

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(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) 또는 지역개발사업 법인(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법 제19조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

(2)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가. -----

(1) -----

----- 지정권자의 -----
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
하는 자에게 공급할 -----.

(2) -----

-----법 제19조제1항제1
호부터 제3호까지-----

출자한 법인 등)이 시행자인
경우로, 원형지 공급 및 개발
절차 등은 법 제33조 및 영 제
41조에 따른다.

나. (생략)

9. 공공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

가. 귀속대상 공공시설

법 제36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
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
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시
설은 도로·공원·철도·수도,
항만·공항·운하·광장·녹
지·공공공지·공동구·하천
·유수지·방화설비·방풍설
비·방수설비·사방설비·방
조설비·하수도·구거, 행정청
이 설치하는 주차장·운동장
·저수지·화장장·공동묘지
·봉안시설, 「유비쿼터스도시
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등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3호와 동법 시
행령 제4호에 열거된 시설에만
해당한다.

-----.

나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

가. -----

-----, 「스마트도시 조성
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3호다목에 -----

-----.

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10. 토지 등의 수용</p> <p><u>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.</u></p>	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</p> <p><u>다음 각 호의 사업은 법 제27 조제1항----- 지역개발 사업에서 -----</u> -----.</p>
<p>제9장 투자선도지구의 지정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투자선도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</p> <p>가. 투자선도지구는 <u>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투자선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(1)·(2) (생략)</p> <p>(3) <u>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 규모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</u></p> <p><u>(가) 발전촉진형 :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</u></p>	<p>제9장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<u>지역개발사업구역의 -----</u> -----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-----.</p> <p>(1)·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(3) <u>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</u></p> <p><삭제></p>

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

(나) 거점육성형 :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3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

(4) (생략)

1) (생략)

3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절차

가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

(1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(가) ~ (바) (생략)

(사)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(4) (현행과 같음)

1)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-----

(1) -----

지정하고자 -----

---. ---, 영 제11조-----

(가) ~ (바) (현행과 같음)

(사) -----

-----.

<p>1)·2) (생략)</p> <p>3) 연도별 투자계획 : 물가 상승률 <u>5</u>를 적용한 연도별 사업비(시설별, 단계별)</p> <p>(아) ~ (차) (생략)</p> <p>(3) (생략)</p> <p>나. 투자선도지구의 변경신청</p> <p>(1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<u>변경하는</u>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다. (생략)</p>	<p>1)·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----- -- <u>5%</u>를 ----- -----</p> <p>(아) ~ (차) (현행과 같음)</p> <p>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(1) ----- ----- <u>변경하</u> <u>고자 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장 단위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집행결과 평가</p> <p>1. 단위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</p> <p>가.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개요 및 대상</p>	<p>제11장 ---</p> <p>1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</p>

(1) 평가개요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 제8항제1호 및 제65조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비지원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(2) 평가대상

(가)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총사업비 50억 원이상 사업으로서,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전형적인 도로가 아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

(나) (생략)

나. (생략)

다. 평가절차

(1) ~ (3) (생략)

(4) 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

(1) -----

----- 법 제65조에

-----재정지원-----
-----.

(2) -----

(가) -----
----- 지역개발계획-----

-----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
-----.

<단서 삭제>

(나) (현행과 같음)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(1) ~ (3) (현행과 같음)

(4) -----

<p>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(가) 평가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<u>현지실사, 관계 전문가 의견,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,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나) (생략)</p> <p>(5)·(6) (생략)</p> <p>라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(가) ----- ----- -----<u>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, 관계 전문가 의견,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등을 첨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(나) (현행과 같음)</p> <p>(5)·(6)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</p> <p>1. 지역활성화지역 선정</p> <p>가. 선정 대상 및 규모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지정목적 달</p>	<p>제12장 ---</p> <p>1.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(1) (현행과 같음)</p> <p>(2) ----- -----</p>

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해당 도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·군 수의 30를 기준으로 선정하되,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 한다.

나. ~ 라. (생략)

2. 지역활성화지역 지정

가. (생략)

나. 지역활성화지역 지정

(1)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 68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.

(2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청서(별지 제5호 서식)에 포함되는 사항 중 위 ‘가-(2)-(가)’부터 ‘(다)’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(2)·(3) (생략)

- 시·군 수의 100분의 30 이내
의 범위에서 -----

-----.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(1) -----

----- 법 제 68조-----
-----.

(2) ----- 법 제68조-----

-----.

(2)·(3) (현행과 같음)

<p>3. 지역활성화지역 지원</p> <p>가. 정부지원</p> <p>(1)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접근성 시설 예산 범위내에서 일반 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포괄보조금의 <u>50</u>를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(2)·(3) (생략)</p> <p>나.·다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3.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(1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50</u>을 ----- -----.</p> <p>(2)·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장 행정사항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3년 10월 15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 <p>3.·4. (생략)</p>	<p>제13장 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0월 15일</u>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1] 지역개발계획안 검증보고서 작성

기준 및 실현가능성 검증기준

평가분야	사업시행자	평가항목	평가지표
기본평가	지자체, 민간 등	입지적합성	입지적합성
		정책목적에의 부합성	정책부합성
모사업(개발사업)	지자체	계획충실성	사업의 구체성
			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
			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
		사업추진가능성	토지 확보 용이성
			국비 기투자 및 관련부처 예산 확보 여부
			지방비 확보 가능성
		수요확보가능성	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
			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·운영 현황
	민간 등	계획충실성	사업의 구체성
			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
			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
		사업추진가능성	토지 확보 용이성
			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의향의 구체성
		수요확보가능성	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
			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·운영 현황
	지자체·민간공동	계획충실성	사업의 구체성
			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
			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
		사업추진가능성	토지 확보 용이성
			국비 기투자 및 관련부처 예산 확보 여부
			지방비 확보 가능성
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의향의 구체성			
수요확보가능성	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		
	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·운영 현황		
기반시설사업	지자체, 민간 등	계획의 충실성	규모의 적정성
			사업의 구체성
			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정도
			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
		사업공공성	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

* 기본 평가는 배점 없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로 '적합' 또는 '부적합'으로 판정하고, 하나라도 '부적합'으로 판정되면 사업을 제척

[별표1] -----

평가유형	사업시행자	평가항목	평가지표
기본평가	지자체,	-----	-----
	민간,	-----	-----
	공동시행 등	-----	-----
사업평가	지자체, 민간, 공동시행 등	-----	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
			사업 관련 관계자 의견(관계기관/주민/전문가 등)
			기반시설 사업의 필요성
		-----	< 삭제 >
			재원 확보 가능성(민간 시행 또는 지자체·민간 공동시행시 민간 투자의향 포함)

		수요확보가능성 등	-----
			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
	<삭제>	< 삭제 >	< 삭제 >
			< 삭제 >
			< 삭제 >
		< 삭제 >	< 삭제 >
			< 삭제 >
			< 삭제 >
		< 삭제 >	< 삭제 >
			< 삭제 >
			< 삭제 >
	<삭제>	< 삭제 >	< 삭제 >
			< 삭제 >
			< 삭제 >
		< 삭제 >	< 삭제 >
			< 삭제 >
			< 삭제 >
< 삭제 >		< 삭제 >	
		< 삭제 >	
		< 삭제 >	
<삭제>	<삭제>	< 삭제 >	
		< 삭제 >	
		< 삭제 >	
		< 삭제 >	
		< 삭제 >	

*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별로 '우수', '보통', '미흡'으로 평가하며, 기본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'미흡'으로 판정되면 사업을 제척

